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45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진선미 · 김한규 · 이건태
강경숙 · 김문수 · 박성준
김우영 · 박은정 · 정을호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기본법」은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에 대학생의 기숙사 수용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에 규정된 대학생의 주거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수용현황 공시로는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현행법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도 대학생의 주거실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학생은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학생이 직면한

주거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학생 주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11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통계조사”는 “주거실태조사”로 본다.

③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주거실태조사의 시기·대상·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4(학생 주거실태조사) ①</u> <u>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u> <u>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u> <u>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u> <u>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이하</u> <u>“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u> <u>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u> <u>다.</u> <u>②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u> <u>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11조의3</u> <u>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u> <u>다. 이 경우 “교육통계조사”는</u> <u>“주거실태조사”로 본다.</u> <u>③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u> <u>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u> <u>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u> <u>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u> <u>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u> <u>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④ 그 밖에 주거실태조사의 시</u> <u>기·대상·절차 및 결과 공개</u> <u>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으로 정한다.